

1. 개정이유

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<2023. 7. 4.>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유가연동보조금 정의(안 제4조)

: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<2023. 7. 4.> 추가

나.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(안 제 6조)

: (대상)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

(기간) 2023년 7월 11일 ~ 2023년 8월 31일 (2개월)

* 「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」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 기간에 관하여는 「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」 제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문상 개정사항은 없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('23.7.4.)

라. 기 타 : 해당 없음

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제나목 중“물가관계장관회의 <2022. 4. 5.>의 「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」,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<2022. 5. 17.>, 비상경제장관회의 <2022. 6. 19.>,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 <2022. 9. 16> 및 2023년 경제정책방향 <2022. 12. 21.>”을 “물가관계장관회의 <2022. 4. 5.>의 「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」,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<2022. 5. 17.>, 비상경제장관회의 <2022. 6. 19.>,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 <2022. 9. 16.>, 2023년 경제정책방향 <2022. 12. 21.> 및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<2023. 7. 4.>”로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고시는 2023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유가보조금”이란 다음 각 목의 금전을 말한다.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물가관계장관회의 <2022. 4. 5.>의 「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」, 경유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<2022. 5. 17.>, 비상경제장관회의 <2022. 6. 19.>, 경유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 <2022. 9. 16> 및 <u>2023년 경제정책방향<2022. 12. 21.></u>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“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”</p> <p>2. ~ 13. (생략)</p> <p>제6조(지급 일반원칙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간</u></p>	<p>제4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.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<u>2023년 경제정책방향<2022. 12. 21.></u> <u>및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<2023. 7. 4.></u>----- ----- -----</p> <p>2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지급 일반원칙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에 관하여는 「여객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급지침」 제5조를 준용한다. 다만,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「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」 제5조 단서를 준용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* 「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」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 기간에 관하여는 「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」 제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문상 개정사항은 없음